

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2-5호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1. 28.~2. 11.(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정수선	1985. 02. 23.	0178200274100001618	₩46,170,000	경기도 부천시 은성로76번길
2	(주)한중남산골 프클럽	110111-3704***	0178200274100001566	₩27,316,8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	(주)일구야	284211-0055***	0178200274100001860	₩17,640,000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	정유선	1968. 05. 08.	0178200274100002446 0178200274100000578	₩8,709,84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5	(주)와이앤케이 이미디에그룹	110111-7551***	0178210274100003175	₩7,725,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납부를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증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 나.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